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2003. 5. 12(충청북도교육감)
- 나. 회부일자 : 2003. 5. 12
- 다. 상정일자 : 2003. 5. 23 제2차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 의결

2. 제안설명(교육국장 반장남)

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먼저 동 조례안은 2003년 7월 1일 개원을 앞 둔 "임해수련원"의 관리 운영 업무를 충청북도학생종합야영장에 이관하고
- 기타 일부 조항의 문패과 지구 및 야영장의 주소를 수정 보완코자 하는 것임.
 - * 야영장 및 장장을 "수련원 및 원장" 등으로 함.
 - * 산 4번지를 "산3번지"로 하고, 다만, 수련시설의 일부는 충청남도 보령시 신북동 2218-1번지에 분다"를 신설하여 삼입 함.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임석규)

- 본 조례에서 핵심이 되는 동 임해수련원은 지난 '97년부터 발주되고 금년도에는 개관 운영될 것이 예견되었는바 위 2건의 조례를 입법 예고하면서 법정기간에도 못마치는 10일만 예고한 사유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0
----------	-----

제출년월일 : 2003. 04. 14.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개정이유

- 충청북도의 학생들에게 입학수련활동을 통한 정서 순화와 진취적 기상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충청남도 보령시 신곡동 2218-1번지에 입학수련시설을 신축함에 따라,
- 이에 대한 운영관리 업무를 충청북도학생종합야영장에 통합시키고 그 명칭을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으로 변경하며,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생수련업무를 이관하여 일원화하기 위한 것임.

□ 주요골자

- “충청북도학생종합야영장”을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으로 명칭 변경 (안 제5절, 제20조제1항).
-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의 학생수련업무를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으로 이관 (안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호).

□ 개정조례안 : 불 입

□ 참고사항

- 신·구 조문 대비표
- 기 타 : 입법예고(03. 04. 04 ~ 04. 13)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의하여 단재의 일을 이어받아 학생들의 인격을 도야하고 애국애족 하는 학생상을 정립하며 교육공무원”을 “의하여 교육공무원”으로 한다.

제13조제1호중 “학생수련 및 공무원연수”를 “공무원 연수”로 한다.

제5절의 제목 “충청북도학생종합야영장”을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학생들로 하여금 대자연과 접하게 하여 정서를 순화시키고 진취적 기상과 의욕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충청북도학생종합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을 “학생들의 진취적 기상을 신장하고, 인격을 도야하며, 애국애족하는 학생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야영장”을 “수련원”으로, “산4번지에 둔다.”를 “산3번지에 둔다. 다만, 수련시설의 일부를 다른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장장”을 “원장”으로 하고, 본문중 “야영장에 야영장장을 두며, 장장”을 “수련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으로 한다.

제22조중 “야영장장”을 “수련원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분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설치)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	제11조(설치) ①	제11조(설치) ①	제11조(설치) ①	제11조(설치) ①
하여 단재의 업을 이어받아 학생들의	하여 교육공무원	하여 교육공무원	하여 교육공무원	하여 교육공무원
인격을 도야하고 애국애족 하는 학생				
상을 정립하며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				
무원의 자질향상과 투철한 교직원을				
확립, 국민교육에 헌신하도록 하기 위				
하여 충청북도단체교육연수원(이하				
“교육연수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제13조(업무) 교육연수원장은 다음 사항	제13조(업무) (현행과 같음)	제13조(업무) (현행과 같음)	제13조(업무) (현행과 같음)	제13조(업무) (현행과 같음)
을 관장한다.				
1. 학생수련 및 공무원 연수에 관한	1. 공무원 연수	1. 공무원 연수	1. 공무원 연수	1. 공무원 연수
계획과 조정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제 5 절 충청북도학생종합야영장	제 5 절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	제 5 절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	제 5 절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	제 5 절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
제20조(설치) ①법 제34조 및 청소년기	제20조(설치) ①	제20조(설치) ①	제20조(설치) ①	제20조(설치) ①
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들	학생들	학생들	학생들	학생들
로 하여금 대자연과 접하게 하여 정	의 진취적 기상을 신장하고, 인격을	의 진취적 기상을 신장하고, 인격을	의 진취적 기상을 신장하고, 인격을	의 진취적 기상을 신장하고, 인격을
서를 순화시키고 진취적 기상과 의욕	도야하며, 애국애족하는 학생상을 정	도야하며, 애국애족하는 학생상을 정	도야하며, 애국애족하는 학생상을 정	도야하며, 애국애족하는 학생상을 정
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충청북도학생	립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	립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	립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	립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
종합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	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	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	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	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
을 설치한다.				
②야영장은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②수련원	②수련원	②수련원	②수련원
은탄리 산4번지에 둔다.	산3번지에 둔다. 다만, 수련시설의 일	산3번지에 둔다. 다만, 수련시설의 일	산3번지에 둔다. 다만, 수련시설의 일	산3번지에 둔다. 다만, 수련시설의 일
	부를 다른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부를 다른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부를 다른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부를 다른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장장) 야영장에 야영장장을 두며, 장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1조(원장) 수련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		원장·
				·
				·
제22조(업무) 야영장장은 다음사항을 관장한다.		제22조(업무) 수련원장·		·
1. ~ 3.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